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2283호

나. 제 안 자 : 성흠제 의원(찬성자 20명)

다. 제안일자 : 2021년 4월 1일

라. 회부일자 : 2021년 4월 6일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5조(우대)에 근거하여 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관람료 감면)에 따른 감면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해 병역명문가를 지정하는 취지와 활성화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바,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를 포함코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시립과학관 관람료 감면대상에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를 포함토록 함(안 제6조제1항제8호 신설).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이하 “병역명문가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를 선양하기 위해 서울특별시립과학관(이하 “과학관”)의 관람료 감면 대상에 병역명문가를 포함하고자 발의됨.

나.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현황

○ 병무청은 2004년부터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갖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양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서울시 또한 2015년 ‘병역명문가 조례’를 제정·시행하면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하고 있음.

○ “병역명문가”는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치고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받은 가문을 말하며, 이 중 서울시민을 “예우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음[1].

---

1)「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

○ 병역명문가의 등록과 현황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병무청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전국의 병역명문가는 6,395가문(병역이행자 총 3만 2,379명)이며, 이 중 서울시에는 21.1%인 1,351가문(병역이행자 6,758명)이 거주하고 있음.

< 서울시 병역명문가 현황 >

(단위: 가문/명, '20.12.31현재)

구 분	계	'21년* (20. 3월~12월)	'20년	'19년	'18년	'17년	'16년~'04년
가문 수	1,351	153	187	157	138	82	634
병역이행자	6,758	766	917	793	712	445	3,125

○ 병역명문가 조례 제5조에 따르면, 예우대상자에게는 서울시 기관·시설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나, 현재 세종문화회관(기획공연, 10% 할인) 한 곳에만 감면을 적용받고 있음.

- 서울시와 시 교육청 소관 시설물 중 병역명문가에 대해 관람료 등을 감면할 수 있는 유료시설 관련 조례는 총 17건으로 파악됨[2].

친 가문으로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2)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6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성흠제의원)되었으며 유료시설은 서울동물원, 서울식물원, 시민청, 청소년시설, 도시건축전시관, 가족자연체험시설, 여성관련시설, 물재생시설, 교육청 직속 체육시설 등임.

다. 과학관 관람료 감면(안 제6조제1항)

○ 개정안은 노원구에 소재한 과학관의 관람료 면제 대상에 병역명문가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를 추가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6조(관람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감면) ① ----------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중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
8. 그 밖에 과학관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9. 그 밖에 과학관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과학관의 관람료는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3]와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에 따라, 성인 2천원, 청소년과 어린이 1천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6세 이하 아동과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면제하고 있음(제6조제1항).

---

3)「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0조(관람료 및 이용료) ① (생략)
②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의 금액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되,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2017년 개관이후 관람객은 총 63만 6천명(수입 3억 5천 4백만원)이고, 이 중 무료 관람객은 21.3%인 13만 5천명에 이름.

<서울시립과학관 관람객 현황>

○ 관람객 현황과 수입

(단위 : 원)

구 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1년(1월~3월)
관람객(명)	635,771	170,585	213,190	216,987	29,391	5,618
관람료 수입	354,266	107,197	113,530	106,327	20,511	6,701
운영일	1,027	203	312	311	141	60

○ 무료 관람객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1년(1월~3월)
합 계	135,356	54,295	33,719	39,166	6,823	1,353
유아	74,669	16,933	22,175	29,159	5,374	1,028
국빈외교사절단						
공무수행 출입						
65세 이상	1,946			1,588	274	84
국가유공자	177			142	29	6
장애인	2,405	707	432	962	220	84
특별시명예시민증						
단체 인솔자	785			770	15	
시장이 인정한 자						
자원봉사	10,201	1,992	4,497	3,368	344	
기타 방문객	45,173	34,663	6,615	3,177	567	151

○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제39조), 「병역법」에서는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을 선양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제82조).

○ 일제강점, 6.25전쟁 등의 국가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세계경제 대국과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바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국가를 위하여 대를 이어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 가족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음.

○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병역명문가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모든 시민들이 정당한 대우와 보상을 받고, 존경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개정안은 부칙의 시행일을 공포 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조례 시행에 따른 행정 준비 기간을 확보해 시민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이번 회기에 미반영된 일부 유료시설(서울동물원, 서울식물원)과 시 산하기관 운영시설 등에도 개정안의 입법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올바른 병역문화 조성과 병역 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병역명문가에 대한 시설 이용료 감면 이외에도 실질적인 보상과 대우 등의 혜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담당 조사관	연락처
이시우	02-2180-8056

[참고자료] 관계법령

「병역법」

제82조(병역의무 이행의 장려) 병무청장은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선양(宣揚)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제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가문(4대째의 직계비속 남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마친 경우 포함)을 말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
2. "부상금"이란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으로 선정한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표창과 함께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3. "병역명문가 가족"이란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4. "병역명문가 대표"란 별지 제1호서식의 병역명문가 신청서에 가문대표로 기재하여 제출한 사람을 말한다.

제20조(병역명문가 예우 및 우대)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가족을 기념식 등 행사에 초청하거나 병무행정 관련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선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의 장에게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등의 이용료 할인 또는 면제
2.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관 등 프로그램 수강료 우대
3. 병역명문가 문패 제작·배포
4. 그 밖에 병역명문가의 예우 및 우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5조(우대)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서 병역명문가의 예우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